

수원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2022가단567207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3나10007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2022가단567207 판결

전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성호

변 론 종 결 2023. 9. 26.

판 결 선 고 2023. 10. 24.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11. 14.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화성시 일원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위 계약에 기하여 D이 원고에 부담하게 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이 보증채무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D에 레미콘을 공급하였는데 ① 2020. 12. 31.부터 2021. 3. 31.까지 화성시 E, ② 2021. 1. 31.부터 2021. 5. 31.까지 화성시 F, ③ 2021. 4. 30.부터 2021. 5. 31.까지 화성시 G에 공급한 레미콘대금 합계 113,263,7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최고액인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보증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채권으로 피고의 연대보증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은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가 보증채무의 범위를 특정하여 보증인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이 규정에서 정한 ‘보증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주채무의 발생기간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다42231 판결). 따라서 보증기간 내에 주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보증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해서 보증책임을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증인의 보증책임을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증기간 내에 주채무가 발생하였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그 기간이 3년이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체결일인 2016. 11. 14.로부터 3년이 지난 2019. 11. 14.에는 보증기간이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주채무자 D에 대한 채권은 위 보증기간이 종료된 후인 2020. 12. 31.부터 2021. 5. 31.까지 공급한 레미콘대금채권인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이 종료된 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의 연대보증책임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허정룡